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Satisfaction of Corrective Counseling Programs for
Korean Domestic Violence Offenders and Its Content Analysis

변상해*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수

Byun Sang-Hae*

Seoul University of Venture & Information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기위해 한국가정폭력 실태의 심각함과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불만족 요인을 발견하고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구성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들의 사용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는 가정폭력을 중대한 인권 침해로 보고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가정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 결과 1997년 12월 13일 법률 제5436호로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위한 특례법」이 제정되었고, 이어서 1997년 12월 31일 법률 제 5487호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두 법률 모두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또한 2001년부터 가정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부로 이관하고 ‘여성폭력방지 종합 대책방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부는 종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가정폭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정폭력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 하기위해 한국가정폭력 실태의 심각함과 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한국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가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한다.

- 연구가설 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다를 것이다.
연구가설 2.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다를 것이다.

II. 선행연구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선행연구

는 최규련, 유은희, 홍숙자 & 정혜정(1997)[1]은 한국가족상담교육단체협의회(1997)에서 개발한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구에서 프로그램 실시 종료 2주 후 전화를 통한 상담과 교육 효과 지속성 여부를 활용하였는데 그 결과 거의 모든 참가자들이 아직 구체적인 기술 실천은 부족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려고 노력하게 되어, 갈등이나 폭력의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김재엽(1999, 2005)[2], 김성일(2005)은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행위자들의 의미 있는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었다고 밝히고 있다.

Martin(1986), Gelles & Cornel(1993), Walker(1984) Hotalibng과 Sugarman(1986)[3] 등은 어려서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자녀학대나 배우자 학대를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표본 집단은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서비스기관으로부터 교정수혜를 제공받은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 방식을 이용하였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 등의 변수를 통계분석 한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1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ANOVA),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V. 논의

1.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만족도

첫째, 가해자의 연령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

도는 가해자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둘째, 가해자의 학력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셋째,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거주 지역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넷째, 가해자의 직업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직업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다섯째, 가해자의 소득에 따른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는 가해자의 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2.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

본 연구는 가정폭력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가정폭력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른 프로그램 만족도는 교정상담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그 중 부부 상담의 만족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Stordeur와 Stille(1989)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1 대 1 관계에서는 행위자의 최소화, 수치심, 고립 등을 다루기 어렵고, 자칫 심리내적인 현상에만 치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Rose(1989)는 집단상담은 보편성, 다양한 모델, 집단 피드백, 상호강화, 상호지지, 대인관계 기술 습득 및 연습을 제공하고 동료들의 직면, 강화, 지지는 폭력행위 교정에 강력한 촉매 작용을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집단상담은 서비스 비용이나 전문인 활용 면에서 경제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로서 윤경자와 공미혜(2001, 재인용)의 연구에 의하면 무엇보다 관련된 각 기관들은 가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서로 교환하며 가해자의 행위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데, 법원의 수강명령을 어길 경우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져 투옥되도록 하는 등 강제조치를 포함하고 있어 교육과정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네소타의 The Wider Men's Domestic Abuse Program(WMDAP)은 다양한 치료적 접근법에 근거하여 학습된 행동으로서의 폭력 교정과 책임성 인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VI. 결론

본장에서는 본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1. 결론

전국에 있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를 내용을 분석한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를 얻었다.

첫째, 가정폭력 가해자의 일반적 특성 가운데 가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학력, 가해자의 주거 지역, 가해자의 직업, 가해자의 소득, 가해자의 아동기 학대경험 등에 따라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둘째,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의 유형 중에는 부부 상담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 프로그램 만족도가 크게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7)[4]에 연구에서 교정상담 종료 이후 부부가 화해하고 동거하는 경우가 73.3%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상담이 폭력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등의 제도에도 부부 공동 교육과 상담 등의 기회를 활성화시켜 건강한 부모의 역할과 부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사법기관과 지역사회 전문기관에 연계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을 강화해야한다. 또한 가정폭력이 발생한 초기단계에서 부터 적극적인 사법기관의 개입을 통해 가해자들의 태도와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차별적, 가부장적 사고 전환을 위해 변화하는 사회 및 여성들의 사고와의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예방교육(예비부부, 결혼초기 부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정비와 예산이 필요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 [1] 최규련·유은화·홍숙자·정혜정(1997). “가정폭력예방 및 대처프로그램 모형개발: 배우자 학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상담연구소.

- [2] 김재엽(2005). “가정폭력가해자 치료프로그램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Vol. 2, No. 3. 87-111.

- [3] Hotaling, G. T., & Sugarman, D. B.(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Vol.1, No.2, 101-124.

- [4] 한국가정법률상담소(2008,3). 2007년 동거 1년 미만 부부 상담 통계.